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정	2010. 7. 29.	문화재청	예규 제86호
일부개정	2011. 2. 14.	문화재청	예규 제92호
일부개정	2012. 2. 2.	문화재청	예규 제108호
일부개정	2013. 2. 12.	문화재청	예규 제116호
일부개정	2014. 5. 23.	문화재청	예규 제136호
일부개정	2015. 1. 30.	문화재청	예규 제145호
일부개정	2016. 2. 22.	문화재청	예규 제160호
일부개정	2016.12. 26.	문화재청	예규 제170호
일부개정	2017. 9. 5.	문화재청	예규 제182호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 1) 본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인 문화재청이 작성하고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3)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자산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준수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 1) 본 자산운용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하고 기금 투자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 2)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내부관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그리고 성과평가 기준 등 자산운용의 원칙과 방향을 전달하며 기금관리 주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3 기금 개요

- 1)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교육연구, 문화재보호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2010년에 최초로 설치하였다.
- 2)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 지정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납부금 출연 또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다.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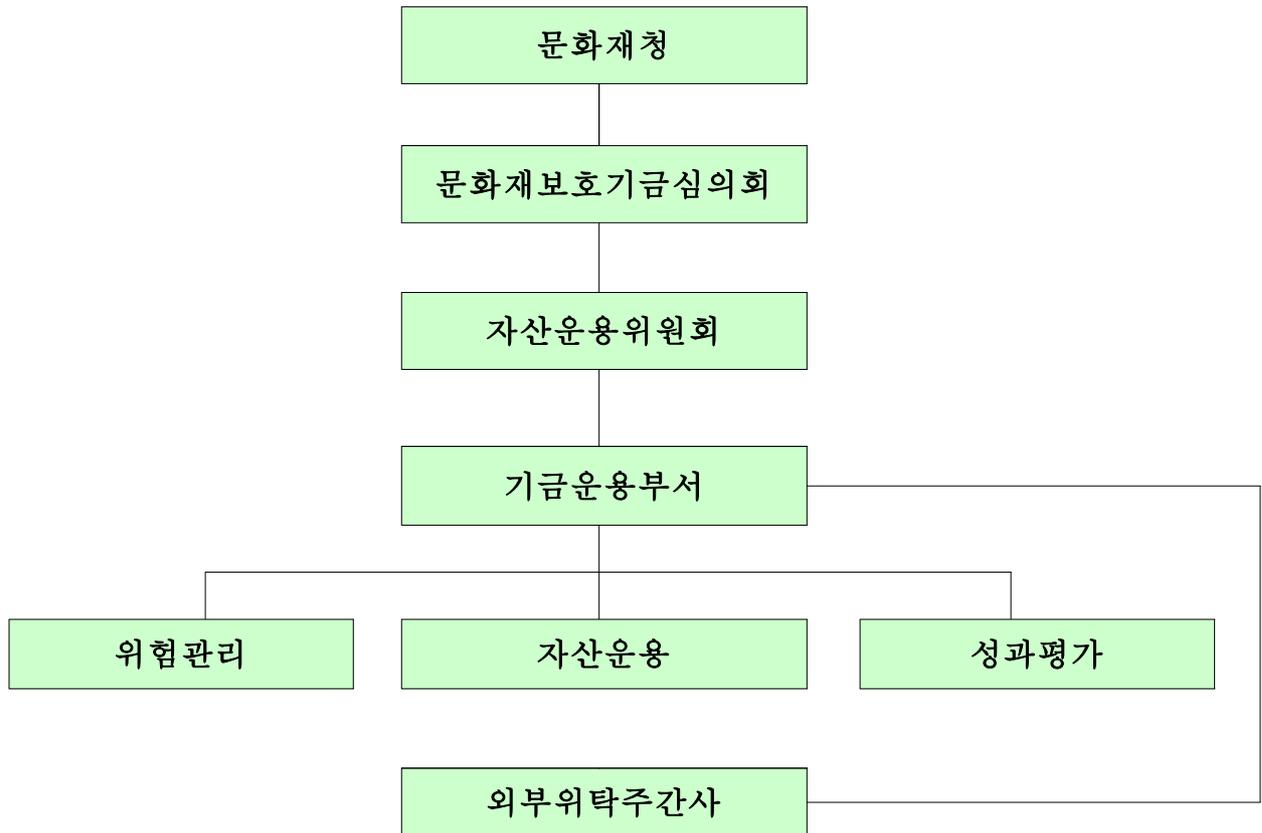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손실위험의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 체계

4.1 자산운용조직 및 기능



1)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가)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고 한다.)는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②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 ③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④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기금심의회는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한다.

2) 자산운용위원회

가)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자산운용지침(IPS) 제정 또는 개정,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 ②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자산운용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
- ④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위험관리·성과평가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
- ⑥ 위탁운용 정책과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자산운용위원회는 총 5명 이내로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둔다. 외부전문가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다) 자산운용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 사전진단 등

가) 위원 위촉 시 다음과 같이 직무윤리 사전진단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표 1]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4) 기금운용부서

가) 문화재보호기금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서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자산운용계획수립
- ② 자산배분안과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자산운용 실행
- ③ 자금 집행 및 관리
- ④ 자산운용관련 규정 마련
- ⑤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금운용업무
- ⑥ 자산운용 성과를 보고하는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총괄

나) 자산운용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위험관리 · 성과평가담당

위험 · 성과관리담당은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측정 · 분석 · 평가하고,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5. 자금운용계획 수립

5.1 자금수지 항목의 분류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수입항목	지출항목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주요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5.2 운용자금의 분류

운용자금은 자금성격에 따라 현금성자금,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으로 분류한다.

단기 자금	현금성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정자금 · 만기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
	유동성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 · 만기 3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
중장기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용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기금자산 중, 단기자금과 공자기금 위탁금을 제외한 모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금액 · 중장기자금 = 총운용 자금 - 단기자금

5.3 자금 유출입 재검토

연초 설정한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매월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자산운용 환경 등을 반영한 자금수지계획을 주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면서 자금을 운용한다.

6. 적정유동성 규모

6.1 의의

적정유동성(유동성 buffer)을 산출함으로써 사업대기성 자금 이외의 적정 현금성 자금 규모를 보유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에 의한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여 기금 자금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6.2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1단계 : 기금의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 분석, 자금수지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
- 2) 2단계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신뢰수준 95%의 확률로 준비해야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를 목표 기간에 따라 설정
- 3) 3단계 : 당해 연도 사업 환경을 고려해 적정유동성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적정유동성 규모를 산출하고, 그 규모를 자금 운용 계획에 반영
- 4) 4단계 : 운용자금 중 적정 유동성 규모 및 사업대기성 단기 자금 규모를 제외한 자금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6.3 적정 유동성 규모 반영 자금배분안

문화재보호기금의 적정 유동성 규모를 반영한 자금배분안은 연간 자산 운용계획에 명시한다.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7.1 목표수익률

문화재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업목적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및 수치는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명시한다.

7.2 허용위험한도

허용위험한도는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기금의 자산배분(안)은 매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설정한 허용위험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 1) 단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0%에 미달할 확률 (Shortfall Risk(원금))을 0.1%이하로 한다.
- 2) 중장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0%에 미달할 확률 (Shortfall Risk(원금))을 1%이하로 한다.
- 3) 전체자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0%에 미달할 확률 (Shortfall Risk(원금))을 0.2%이하로 한다.

8. 자산배분

8.1 투자가능자산

- 1)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과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공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운용자금 투자대상 자산군>

구 분	운용기간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현금성 자금	3개월 미만	MMDA, 정기예금	MMF(신종MMF포함)
유동성 자금	3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CD, 국공채, 통안채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중장기 자금	1년 이상	정기예금, 국고채, 통안채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2) 다만,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금 투자자에 자산 운용을 위탁한다.

가) 연기금 투자자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기금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자 거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상품은 연기금 투자자의 지침(규정)을 따른다.

8.2 자산배분의 원칙 및 방법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배분 비중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위임하고, 연간 자산운용계획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기금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등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중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실행한다. 전략적 자산배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1) 자금수지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자금 규모를 도출
- 2) 기금 목적, 운용철학, 자산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군을 분류
- 3)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반영한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추정
- 4) 평균 분산 최적화 모형(Mean Variance Optimization),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 기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여 제약조건인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을 산출

8.3 자산배분안 재조정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비중을 재조정한다.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9.1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정책

문화재보호기금은 내부 인력을 통한 직접운용 또는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한 위탁운용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위탁운용 시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위탁운용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9.2 위탁운용기관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회사
- 2)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 3)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
- 4) 연기금 투자법

9.3 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 1) 기금은 위탁 운용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기관 선정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단, 기획재정부의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91호, 2016.2.4.)에 의한 연기금투자자는 선정과정을 생략하여 운용할 수 있다.
- 2) 기금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한다.
- 3) 기금은 위탁 운용기관의 관리를 위해 위탁 운용기관의 관련 법률, 약관 등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및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9.4 만기도래 상품의 재투자

- 1) 예치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때에는 만기시점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재투자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재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지침에서 설정된 연간 자산배분안을 감안하여 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자금수지 분석에 의한 사업비 총당 여부 및 운용기간별 재예치 가능 금액 추정

나. 자산배분안에 따른 배분금액 대비 운용실적 분석

- 2) 만기도래 상품의 재투자는 운용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거래기관 운용한도 초과 여부

나. 벤치마크 상품의 시장수익률 초과 여부

다.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금리 전망 등

- 3) 단기자금의 재투자 시 상품별 조기환매 가능여부, 중도해지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4) 만기를 연장하는 상품은 종전의 운용 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가. 연간 자금운용 계획상 운용계획 변경이 정해진 경우

나. 운용 결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9.5 만기도래 전 상품의 환매 및 환매 후 상품 교체

- 1)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기관의 신용도 하락, 자금수지 변동에 따른 유동성 부족,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기도래 전에 매도 또는 환매할 수 있다.
-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용상품부터 매도 또는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을 우선 매도 또는 환매하며 상품별 매도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실적배당형 상품 : 장단기 금융시장 전망을 토대로 만기 전 매도 또는 환매에 따른 예상손실이 적고,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나. 확정금리형 상품 : 약정금리가 낮은 순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10. 의결권 행사

기금심의회는 투자 자산의 보존과 기금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1. 위험관리

11.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가) (정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부족이나 시장의 거래 부진 등으로 정상 가격에 매매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의미한다.
- 나) (관리방법)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월, 분기, 연간 단위로 95% 신뢰수준의 CaR(Cashflow at Risk)를 측정하여 목표기간별 적정 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관리한다. 보조적으로 유동성 갭을 추정한다.

2) 시장위험(Market Risk)

- 가) (정의)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 나) (관리방법) 시장위험은 95% 신뢰수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월간 시장위험(Market VaR)을 측정·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시장위험(Market VaR) 한도는 매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설정한다.

3) 신용위험(Credit Risk)

- 가) (정의)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 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나) (관리방법) 채권투자 가능등급 및 규모 설정, 합리적 평가지표에 의한 운용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한도 차등 설정 등 신용위험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4)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가) (정의)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이 손실을 보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나) (관리방법) 정기적인 감사에 따라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11.2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위험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자산운용 관련 업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되, 자산 변동 및 시장위험 현황 등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수시·정기적으로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3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 등의 요인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마련한 대응방안에 따라 조치한다. 위기상황 시 대응방안은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1.4 연기금 투자월에 관한 예외 조항

연기금 투자월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기금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월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 투자월 위험관리 지침(규정)을 따른다.

12. 성과평가

12.1 성과평가의 원칙

- 1)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성과평가는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함과 동시에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조직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자산배분 및 보상체계에 반영(feedback)하도록 한다.

12.2 성과평가 주기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기 및 연간 자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평가도 병행한다.

12.3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분기 및 연간 평가의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성과평가의 기준

- 1)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하며 단순수익률 외에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IR 또는 Sharpe 비율)도 평가한다.
- 2) 성과평가를 위한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사전에 부여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적 실현수익률이며, 운용자산군별 실제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기준수익률 >

구 분		운용기간	기준수익률(BM)	제공기관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MMF 업계평균 수익률	연기금 투자폴
	유동성	3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기준수익률	연기금 투자폴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	1~2년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채 권	채권형 수익증권 기준수익률	연기금 투자폴
		주 식	KOSPI 지수	연기금 투자폴
전체 포트폴리오 = $\sum(\text{투자비중} \times \text{BM})$				

* 투자자산을 대표하는 시장수익률로서 자금운용성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

12.5 성과평가 보상제도

보상제도는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보상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쟁적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보상정책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감사 및 공시

- 1) 기금관리주체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민간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은(회계법인)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공시한다.

14.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문화재보호기금의 모든 자산운용 담당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 운용 관련 제반규정,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직원은 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을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 3)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직원은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5)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 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6) 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직원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된다.
- 8) 직원은 위탁운용기관과 계약 시 수익률 보장 등 이면합의를 하거나 부당하게 위탁운용기관의 자산운용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9) 직원은 실적배당상품의 금리약정, 손실보전을 위한 이면계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86호, 2010. 7. 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92호, 2011. 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08호, 2012. 2. 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16호, 2013. 2.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36호, 2014. 5. 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45호, 2015. 1.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60호, 2016. 2.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70호, 2016. 12. 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 호, 2017. .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문화재보호기금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